

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고소기간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여지는 범죄부터 적용한다.
- ③(정보의 등록에 관한 적용례) 제22조 및 제2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범죄를 범하고 형의 선고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2회 이상” 여부는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형의 선고를 포함한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유형에 자위행위를 포함하고,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직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 등은 직무상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범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로서 재범의 우려가 있는 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진 등의 정보를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된 정보를 청소년관련 교육기관의 장 등에 대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회에서 의결된 사립학교법중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노 무 현 인

2005년12월29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김진표  
 교육인적 자원부장관

◎法律 第7802號

私立學校法中改正法律

私立學校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재산이전의 보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한 학교법인은 지체 없이 재산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등기부 등본 및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재산출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출연자의 정관기재) ①학교법인은 일정한 재산을 출연한 자의 출연의사를 보호하고 그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관에 기재할 수 있다.

- 1. 출연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 2. 출연재산의 내역과 평가기준·금액
- 3. 출연자의 출연의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자 외에 학교법인의 설립 이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한 자에 대하여도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관에 기재할 수 있다.

제14조에 제3항 내지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학교법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정수의 4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신설 법인의 경우 관할청)가 2배수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④2 이상의 학교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이사를 추천함에 있어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협의하여 추천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가 이사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추천하지 못하는 때에는 관할청이 추천한다.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의 추천, 선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제4항 중 “贊同으로 管轄廳의 승인을 얻어”를 “찬동으로”로 하고, 동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한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8조의 제목“(議決定足數)”를“(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로 하고, 동조중 “在籍理事 過半數의 贊成으로 議決한다.”를 “재적이사 과반

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정관이 정한 이사정수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하며,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 ①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회 개최 당일에 회의록 작성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별로 심의·의결 결과를 기록한 회의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

1. 개의·회의중지 및 산회의 일시
2. 안전
3. 의사
4. 출석한 임원과 직원의 성명
5. 표결수
6. 그 밖에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회의록 및 회의조서에는 출석임원 전원이 그 성명을 알 수 있도록 자필로 서명하고, 그 회의록 또는 회의조서가 2매 이상인 경우에는 간(間)서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 내에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회의록을 대신하여 회의조서를 관할청에 제출할 수 있다.

④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

해서는 이사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회의록의 공개에 관한 기간·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중 “理事는 5年, 監事는 2年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러나 重任할 수 있다.”를 “이사는 5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로 한다.

이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적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2호중 “당해 學校法人의 設立目的을 達成할 수 없게 한 때”를 “당해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때”로 하며, 동항에 제4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 법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방조한 때
5. 학교의 장의 위법을 방조한 때
6. 관할청의 학교의 장에 대한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
7. 취임승인이 취소된 자가 학교의 운영에 간여하는 것을 방조한 때

제20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3(임원의 직무집행정지) ①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안에서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2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취임의 승인취소를 위한 조사 또는 감사가 진행 중일 때
2.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 기간 중 해당 임원이 계속 직무를 집행할 경우 법인 또는 학교운영상 중대한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사유가 종료된 때에는 관할청은 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제21조제2항중 “3분의 1”을 “4분의 1”로 하고, 동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5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학교법인에 두는 감사 중 1인은 초·중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가, 대학은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학평의위원회가 추천하는 자로 한다.

⑦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취임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1.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2.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자
3. 제54조의2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에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자

제2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호중 “2년”을 “3년”으로 하며, 동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4급 이상의 교육행정공무원 또는 4급 상당 이상의 교육공무원으

로 재직하다 퇴직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23조제1항 중 “당해 學校法人이 設置·經營하는 私立學校의 長”을  
“당해 학교법인 및 다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이  
나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3항 후단을 삭제하며, 동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1.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때
3.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해임한 때

⑤관할청은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에 대하여 이사회외 소집을 요  
구할 수 있다.

⑥임시이사의 선임방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임시이사의 해임)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임시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임할 수 있다.

1. 임시이사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2. 임시이사가 그 직무를 현저히 태만한 때
3.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제25조의3(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①관할청은 제20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임시이사의 선  
임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이사를 해임  
하고 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의 선임은 상당한 재산을 출연하거나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 및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의  
견을 들어 관할청이 선임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이사의 3분의 1 이상  
은 초·중등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대학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  
하는 자로 선임한다.

④2 이상의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사의 추천은 제1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2(대학평의회) ①대학교육기관에 교육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대학평의회를 둔다.

②대학평의회의 기능·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2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항을 삭제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되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 심의·의결로 확정하고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다만, 유치원은 학교의 장이 편성·집행한다.

제29조제6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2.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의 최소한의 이사회 운영 경비 및 사무직원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제29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비회계에서 전출·대여할 수 있는 대상 학교법인, 지원 범위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제출”을 “보고하고 공시”로 하고, 동조제3항 중 “豫算·決算諮問委員會의諮問을 거처야 한다. 다만, 幼稚園은 豫算·決算諮問委員會의諮問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를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회의 자문을 거처야 한다. 다만, 유치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한다.

제31조제4항중 “學校法人으로부터”를 “당해 학교법인의 감사전원이 서명·날인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게 하여야 하며, 학교법인으로부터”로 하고, 동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할 학교법인의 대상범위, 실시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53조의2제2항중 “總長·學長”을 “학교의 장”으로 하고, 동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요건과 공개전형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3제1항중 “敎員(學校의 長을 제외한다)의 人事에 관한”을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면 등 인사에 관한”으로 한다.

제5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명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4조의3제1항제1호중 “2年”을 “5年”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2年”을 “3年”으로 하며,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파면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54조의3에 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5년이 경과한 자가 학교의 장

으로 취임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③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④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58조제1항제4호중 “政治運動 또는 勞動運動”을 “정치운동”으로 한다.

제62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학교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의 수가 전체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66조의2제1항중 “2年”을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3년)”으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3조의2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3조의2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

행되는 신규채용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원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4조 및 제21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위원회의 이사 추천의 수가 미달하는 경우에는 임원을 새로이 구성하거나 임원의 임기가 만료 등으로 인하여 궐위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동위원회의 추천에 의한 임원의 구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임원의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은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임원의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임원 및 교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 또는 교원은 제22조제2호·제3호 및 제54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취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6조(학교의 장의 임명의 제한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학교의 장은 그 임기 만료시까지 제54조의3제1항 내지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초·중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 단서중 “第1號·第2號”를 “제1호”로 한다.

◇사립학교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학교법인의 이사 정수의 4분의 1 이상은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위원회가 2배수 추천하는 인사 중에서 선임하고,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그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도 겸직하지 못하도록 하며, 학교회계의 예산은 당해 학교의 장이 편성하되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후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하도록 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사유에서 노동운동을 한 경우를 제외하는 등 사립학교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 및 공공성을 제고하여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